

무배당 리치저축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리치저축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4년 2월 26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효성(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리치저축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①)리치(②)저축보험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또는 (②)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5년 만기	3년납	만 15 ~ 최고 70 세	월납
7년 만기	3 / 5년납		
10년 만기	3 / 5 / 7년납, 전기납		
15년 만기	3 / 5 / 7 / 10년납, 전기납		
20년 만기	3 / 5 / 7 / 10 / 15년납, 전기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 1구좌 기준: 최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나이별 최저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5년만기	3년납	-	-	만 15~36세	37~50세	51~57세	58~61세	62~63세	64~65세	66~67세	68~69세	70세
	3년납	만 15~31세	32~48세	49~55세	56~62세	63~66세	67~69세	70세	-	-	-	-
10년만기	5년납	만 15~40세	41~52세	53~58세	59~64세	65~67세	68~70세	-	-	-	-	-
	3년납	만 15~43세	44~54세	55~59세	60~64세	65~68세	69~70세	-	-	-	-	-
	5년납	만 15~52세	53~59세	60~63세	64~68세	69~70세	-	-	-	-	-	-
	7년납	만 15~55세	56~61세	62~65세	66~70세	-	-	-	-	-	-	-
	전기납	만 15~53세	54~60세	61~64세	65~68세	69~70세	-	-	-	-	-	-
15년만기	3년납	만 15~44세	45~53세	54~57세	58~63세	64~66세	67~68세	69~70세	-	-	-	-
	5년납	만 15~53세	54~59세	60~63세	64~67세	68~70세	-	-	-	-	-	-
	7년납	만 15~56세	57~62세	63~65세	66~69세	70세	-	-	-	-	-	-
	10년납	만 15~58세	59~64세	65~67세	68~70세	-	-	-	-	-	-	-
	전기납	만 15~59세	60~64세	65~67세	68~70세	-	-	-	-	-	-	-

20년만기	3년납	만 15~42 세	43~51 세	52~55 세	56~60 세	61~64 세	65~66 세	67~68 세	69~70 세	-	-	-
	5년납	만 15~51 세	52~57 세	58~61 세	62~65 세	66~68 세	69~70 세	-	-	-	-	-
	7년납	만 15~55 세	56~60 세	61~63 세	64~67 세	68~70 세	-	-	-	-	-	-
	10년납	만 15~58 세	59~62 세	63~65 세	66~69 세	70 세	-	-	-	-	-	-
	15년납	만 15~60 세	61~64 세	65~67 세	68~70 세	-	-	-	-	-	-	-
	전기납	만 15~60 세	61~65 세	66~67 세	68~70 세	-	-	-	-	-	-	-

나. 추가납입보험료

- 보험계약 승낙일(승낙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후 회사의 승낙을 얻은 날을 말하며, 그에 따라 청약일과 승낙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후부터 「보험기간-2년」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한도로 하며,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입한도를 상기의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적립액의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매회 10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영수한다.

매월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000원 +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6%)
200만원 이상	Min { 24,000원 +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부분의 2.0%), 기본보험료의 1.2% }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29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 개월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 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 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액이 1 구좌당 100 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다.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하다.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인출 할 수 없다.

마.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계약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 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내부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다만,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산출식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 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 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3) 외부지표 산출식

$$\text{외부지표} = \text{국고채}(5 \text{ 년})\text{수익률} \times \beta_1 + \text{회사채(무보증 3 년, AA-)}\text{수익률} \times \beta_2 + \text{통화안정증권}(1 \text{ 년})\text{수익률} \times \beta_3$$

- (주) 1.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b+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b+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b+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국고채(5 년) 및 회사채(무보증 3 년, AA-)와 통화안정증권(1 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3.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드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드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 마.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보험료납입 일시증지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증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증지 신청 가능 시점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 이상 (다만, 전기납 제외)	5년
3년납, 전기납	신청불가

-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증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다.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문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문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라. 보험료납입 일시증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료납입 일시증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 마.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의 종료(보험료납입 일시증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증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사. ‘다’ 및 ‘바’에서 월계약해당일은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경과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아. ‘다’ 및 ‘바’에서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4.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본보험료×12×Min(보험료 납입기간, 10)

라.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